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21
----------	------

2020년 9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8. 12. 이준형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8. 21.

다.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 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현장에서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민간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어 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은 경제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 대상에 따라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청년청 등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 종합적인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시행하는 정책 환경의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서울특별시의 일자리 정책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예산 중복이 나타나거나 종합적인 성과 관리가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환경 구축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입법·정책 활동을 펼치고자 제안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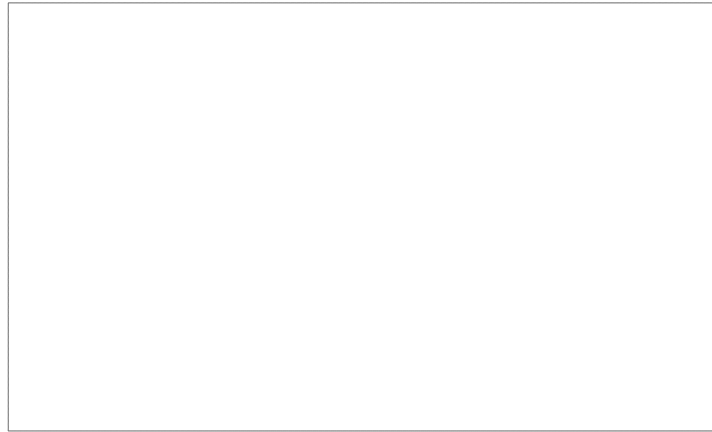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자동화·무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¹⁾
- 한국은행이 '20년 6월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8년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0.1명으로 2015년 11.4명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업종별로 보더라도 제조업의 경우 2015년 7.2명에서 2018년 6.2명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2015년 14.5명에서 2018년 12.8명으로 유사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²⁾

1)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보도자료, 2020-06-24).

2) 취업유발계수는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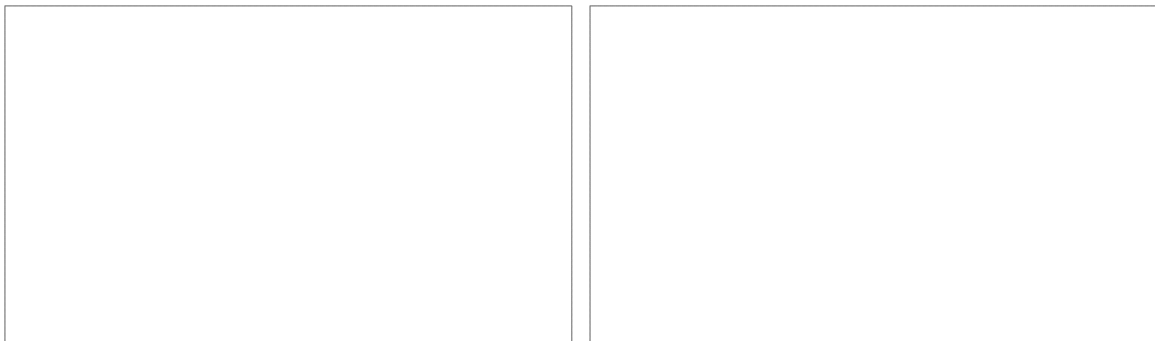
〈그림 1〉 취업유발계수 변화 추이(2015~2018년)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

- 대표적인 고용 지표인 실업률과 고용률을 보면, 지난 10년 간 두 지표 모두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고용률의 경우 약간 상승하기도 했으나, 서울특별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19년 기준 전국 평균 실업률은 3.6%인데 반해 서울 평균은 그보다 0.8%p 높은 4.4%를 기록하였으며,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0.2%인데 반해 서울 평균은 그보다 0.3%p 낮은 59.9%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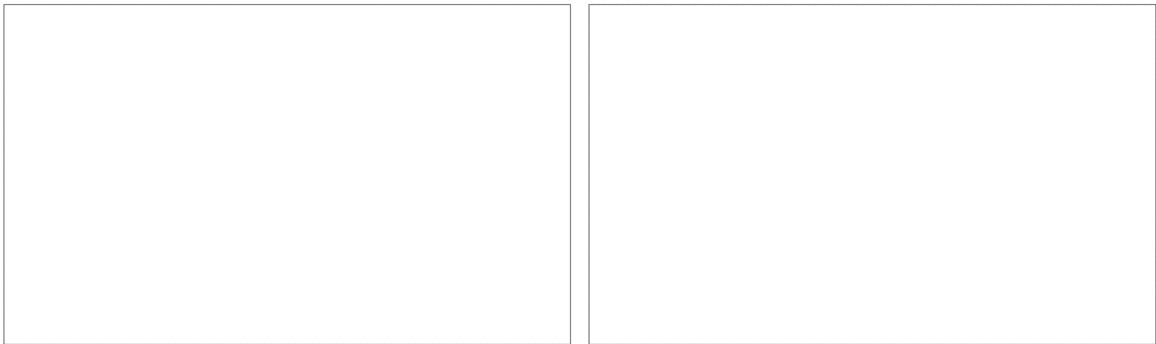
〈그림 2〉 실업률과 고용률 : 서울시와 전국 비교 (2010~2019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최근 1년간 서울특별시 고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데, 실업률은 2019년 하반기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5월 5.8%로 정점에 이른 후 각종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2020년 2월부터 급격히 하락해 4월 58.6%로 최저점을 찍은 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서울시의 실업률과 고용률 변화 추이 (2019년 7월~2020년 7월)



- 서울특별시의회는 이와 같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 2015년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에게 일자리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5년 단위 ‘서울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2018년 수립)과 1년 단위 ‘서울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왔음.
- ‘2020년 서울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5개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경제정책실, 청년청,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재생실, 노동민생정책관 등 6개 부서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추진과제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및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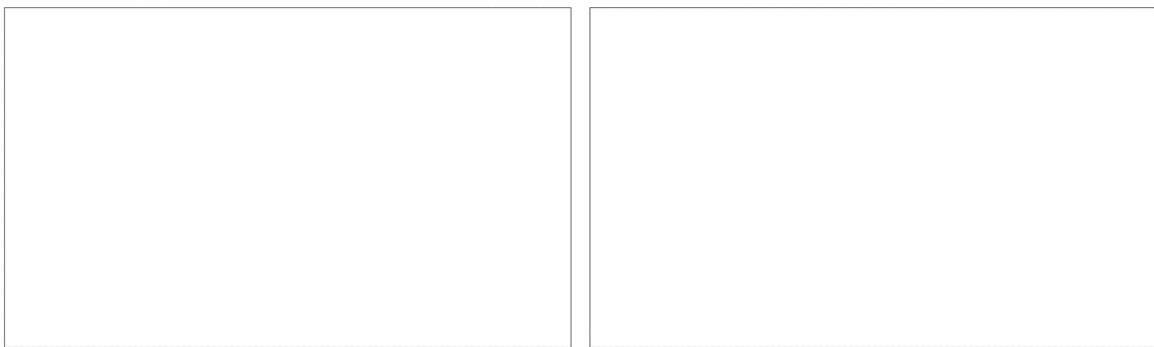
〈표 1〉 '2020년도 서울시 일자리대책' 세부실천 과제

추진전략	연번	추진과제	추진부서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1-1	일자리창출 역량 집중, 276개 사업 추진	일자리정책담당관
	1-2	일자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1-3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1-4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청년 체감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2-1	청년 취업지원 공간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자리정책담당관
	2-2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육성	
	2-3	뉴딜일자리 청년 취업 연계 강화	
	2-4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2-5	청년-기업 미스매칭 해소 위한 강소기업 선정·지원	
	2-6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2-7	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2-8	청년 역량강화 지원(청년수당+청년프로젝트)	청년정책담당관
대상별 사회서비스 연계 공공일자리 확대	3-1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자리정책담당관
	3-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여성정책담당관
	3-3	복지 수혜대상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본부
시정 분야별 주요사업 민간 일자리 창출	4-1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유망 일자리 발굴	경제정책과
	4-2	도시재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생정책과
	4-3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문화예술과
	4-4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양질의 고용기회 확대	사회적경제담당관
시·구 협력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5-1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일자리정책담당관
	5-6	인센티브를 통한 자치구 일자리 성과 제고	
	5-3	일자리센터의 일자리허브 기능 강화	
	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협력 추진	
노동존중 문화 노동권익 보호	6-1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지속 추진	노동정책담당관
	6-2	노동권익 사각지대 보호체계 강화	
	6-3	노사정 협력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확산	

- 다른 한편, 서울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5년 전체 일자리 210,379개에서 2019년 375,505개로 지난 5년간 78.5% 증가했으나, 연도별 일자리 실적 증가율은 2016년 34.6%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서울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도별 일자리 실적 증가율 (2015년~2019년)³⁾

(단위: 개, %)



-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저성장 추세, 전국 대비 서울시의 저조한 고용 지표 속에 서울시 일자리 정책이 각기 다른 대상을 두고 6개 부서에 걸쳐 추진되면서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하지 못하여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고,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서 간 원활한 정책 조율과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독려·감독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정책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판단됨.

3) 직접 일자리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실업자 등 미취업 시민에게 생계유지, 자활발판 제공 또는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이며, 간접 일자리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민간지원 등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의미함.

-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견은 없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고 특히 필요한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⁴⁾
- 다만, '20년 8월 21일에 제안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영세 소상공인 및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의 민생안정대책 수립과 그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들 특별위원회와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간의 활동 중복과 그에 따른 혼란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한국 경제의 고용 없는 저성장, 서울시의 저조한 고용 상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조건 악화, 6개 부서에 걸쳐 산재한 일자리 정책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긴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을 다루며 부서간 정책 조율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감독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활동으로 판단됨.

4)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만, 구성 목적이 유사한 특별위원회들과의 활동 중복 문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 부대의견 :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 특별위원회」와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821
----------	------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이준형, 김용석, 이병도,
최 선, 이호대, 김경우,
권수정, 송아량, 이광호,
이경선, 이성배, 정진술,
신정호 의원(13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현장에서 무인화·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민간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되어 일자리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은 경제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대상에 따라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청년청 등으로 분산 시행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 종합적인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시행하는 정책환경의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헌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불 입 :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과 국가가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국정운영의 우선과제로 채택할 만큼 일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러나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민간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확산되면서 산업현장의 무인화·자동화로 인한 민간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의 민생안정과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여성, 노숙인,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순노무 위주의 공공근로를 경력형성형 일자리인 뉴딜일자리로 확대한 바 있다.
- 또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 취업준비생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멘토스쿨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 그러나 노숙인, 장애인, 여성,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정책대상이 세분화됨에 따라 각각의 소관 실·국에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도 수행하여, 관련 예산의 중복투자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실·국에서 시행되는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성장이며 행복임을 선언 하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환경 구축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0.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